

PL법의 필요성과 포장에 관한 PL사례

박희주 /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I. PL법의 의의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L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제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2. PL법의 필요성

2-1. 소비자 보호

PL법이 도입되면 우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용이해짐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된다. 오늘날의 대량생산·선전·판매·소비라는 제품유통체계 하에서, 제품을 신뢰하고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불법행위법리는 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어서, 제품에 대한 지식, 특히 안전과 관련된 지식에서 제조자에게 크게 뒤쳐 있는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피해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현대의 경제구조와 제조자와 소비자간의 능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PL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2-2.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입선다변화 전면해제 등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수입품과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바, 따라서 PL법이 정착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안전도 높은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제품에 결함이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 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바, PL법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제품의 국내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2-3.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PL법이 도입되면 제품가격에 제품결함에 의한

손해분이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의 가격이 위험한 제품의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 저가격을 이유로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축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위험제품의 생산·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제품안전이 향상되고 위험제품의 생산·소비가 감소하여 사고확률이 줄어들다면 사회적 후생도 증진된다.

2-4. 국제규범의 도입

PL법은 제품안전에 관한 세계 공통의 legal standard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EU가맹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 우리 나라를 제외한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PL법을 채택·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PL법을 입법하지 않으면, 국제적 조화를 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의 회생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당한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

3-1.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래에는 주로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불

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비자와 제조자의 사이처럼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이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제조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위법성」이라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과실」 등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와 같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바,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이 「판매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 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2.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

앞에서 보았듯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종래 피해자가 직접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는 것 이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PL의 기본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제조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품의 결함이라는 제품의 객관적 상태를 입증하면 된다.

둘째, 품질관리를 엄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되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하지 어렵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표 1]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구 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필요여부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 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4. 입법예고법안에 대한 평가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공표된 PL법안들이 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항들로서는 ① 무과 실책임의 원칙을 도입할 것, ② 결함의 정의는 통상인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로 할 것, ③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둘 것, ④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분양 공급주택을 포함할 것, ⑤ 제조자의 배상이행 확보조치를 강제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 중 금번의 입법예고법안은 ①과 ②만을 도입하고 있어서, 종전의 법안에 비하여 상당히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내용보다는 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대량공급주택 등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를 일차농산물까지 확대할 것,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 배상범위를 확대할 것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

로의 개정요구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따라 앞으로 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5. 제조물책임 사례

5-1. 음료수병 사례

이것은 샴페인류의 탄산음료수의 중간마개가 튀어나와 눈에 맞은 사례이다. 검사결과 문제가 된 음료수의 탄산가스압이 일반 사이다 보다 2 배나 되었다.

그리고 병에는 「병을 차갑게 한 후, 사람을 없는 쪽으로 마개를 여시오」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피해자는 차갑게 하지 않고 마개를 밖으로 빼내려고 한 때에 사고를 당하였다. 중간마개는 가벼워서 쉽게 날아가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었다. 제조자는 피해자의 오사용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치료비, 휴업보상, 위자료 등을 지불하였다.

5-2. 캔 사례

이것은 치즈가 든 캔의 뚜껑을 잡아당겨 열고 있었는 바, 텁니 모양으로 절단된 뚜껑의 가장자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아의 눈을 스쳐 실명하게 된 사례이다. 캔에 대한 검사 결과, 위로 잡아당겨 열게 되어 있는 캔 중, 텁니 모양으로 절단되는 캔은 전체가 원형으로 절단되는 캔에 비하여 뚜껑이 캔에서 분리되기까지의 높이가 3

배나 되었고, 또한 그 절단면도 7~8°의 예각으로 되어 가장자리는 針狀으로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캔의 결함이 인정되어 제조자는 소비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

5-3. 즉석 카레 사례

이것은 포장과 표시의 문제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카레를 표시에 따라 전자렌지로 가열한 바, 폭발하여 안면과 눈에 화상을 입은 사례이다. 용기에는 「용기를 감싸고 있는 필름에 대나무 꼬챙이로 5곳 정도 구멍을 뚫으시오」라고 표시되어 있었는 바, 그 표시대로 하여 2분간 가열한 후 꺼내는 순간 뜨거운 카레가 얼굴에 튀고 눈에도 들어갔다.

이 사례는 카레 제조자의 책임에 관한 것인지만, 용기와 표시의 관련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5-4. 섬유제품 사례

미국에서는 섬유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로 만든 봉지가 어린이들이 뒤집어서고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비닐포장봉지는 섬유제품을 꺼낸 후 즉시 폐기하도록 경고표시를 하고 있다.

5-5. 기타 사례

그 밖의 포장과 관련된 사례로는, 컵라면의 용기가 파손되어 뜨거운 국물이 흘러나와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 즉석 팝콘을 불에 올려 손잡이를 흔들면서 데우고 있는데, 봉지의 가장자리가 파손되어 기름이 손잡이를 타고 흘러나와 손에 화상을 입힌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